안산대학교	직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32
		제정일자	2019.03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직원회(이하 “직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대학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건의
2. 직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에 관한 건의
3. 직원에 관계되는 각종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심의
4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건의

제3조(구성) ① 직원회는 대학 소속의 전 직원(비정규직 제외)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직원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④ 총회는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되, 팀장이 없는 부서는 선임자가 위원이 된다.

④ 서기는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직원회를 대표하며, 직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직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, 운영위원회 회의로 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매 학년도 말에 개최한다.

③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직원에 관계되는 각종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
2. 운영위원회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
3. 총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4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①항의 모든 회의 개최통보는 총회회원에게 한다.

제7조(자료제출요구)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) 직원회의 사무 처리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